

의안번호	2219134
의 퇴 인	배준영의원
회 답 일	2026.8.24.
추계번호	26B2761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의2 (지하개발의 사후 모니터링)	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개발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한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주변 지반 및 지하시설물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제1항) 제1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, 제2항에 따른 결과의 전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41조의2 (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)	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·관리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(제1항)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,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20조의2 (지하개발의 사후 모니터링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지하개발의 사후 모니터링(안 제20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개발사업자인 경우, 사업 완료 이후 주변 지반 및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·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법 제34조¹⁾에 따라 사업 완료 이후에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설

물 관리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

- 다만, 현행법에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사업 완료 이후 주변 지반 및 시설물에 대하여 별도로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모니터링 비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지하개발사업의 건수 및 규모와 모니터링 기간·주기·방법,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향후 모니터링 대상 사업의 건수 및 규모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고, 모니터링 기간·주기·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

□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(안 제41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으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, 개발사업자 행정규칙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 제10조제1항²⁾에 따라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 사업자는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
-
- 1) 제34조(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)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,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.
-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,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.
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.
- 2) 제10조(손해보험)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(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56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가입할 수 있으며, 시행령 제78조,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「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」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규모와 수, 보험의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, 보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보험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규모를 특정하기 곤란하고,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,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